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
2000. 2. 18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20일

·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0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70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0. 2. 18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김홍기)

가. 제안 이유

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중 샤워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징수규정이 일부 불합리하여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입장객 편의를 도모코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○ 샤워장 시설사용료 조항 삭제(별표2)

- 샤워장 시설사용 1회시

- 어 른 : 500원
- 학 생 : 3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유해영)

-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샤워장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원안 가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9. 별 첨

- ◎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청북도지사 제출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중 “샤워장”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